



이사회 규정

2013. 03. 04. 제정
2018. 04. 27. 개정
2020. 02. 28. 개정
2023. 02. 24. 개정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 (목적) 이 규정은 동아에스티주식회사(이하 "회사"라 한다)의 이사회에 관한 기본사항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적용범위)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 3 조 (권한)

-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,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,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.
-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.

제 3 조의 2 (대표이사 승계 계획) 회사는 대표이사의 승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사회에서 승인 받아야 하며, 승계계획 실행 시 이사회는 승계절차 이행을 감독한다. <개정 2020.02.28>

제 2 장 구 성

제 4 조 (구성) 이사회는 이사 전원(사외이사 기타 비상근이사 포함)으로서 구성한다.

제 5 조 (의장)

- ① 이사회의 의장은 정관 제34조 제1항에 의거 이사 중 이사회 결의로 선임한다.
<개정 2018.04.27>
- ② 의장 유고 시에는 정관 제34조 제1항에 의거 연장자 순으로 의장을 대행한다.
<개정 2018.04.27>
- ③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. <신설 2018.04.27>
- ④ 이사회 의장의 임기는 이사 재임기간으로 한다. <신설 2018.04.27>

제 6 조 삭제 <2018.04.27>

제 3 장 회 의

제 7 조 (이사회 종류) <개정 2018.04.27>

-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.
- ② 정기이사회는 2월, 4월, 7월, 10월에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<신설 2018.04.27>

③ 임시이사회는 긴급한 의안이 있을 때 소집한다. <신설 2018.04.27>

제 8 조 삭제 <2018.04.27>

제 9 조 삭제 <2018.04.27>

제 10 조 (소집권자)

- ① 소집권자는 정관 제37조 제2항에 의거 이사회 의장으로 한다. <개정 2018.04.27>
- ② 삭제 <2018.04.27>
- ③ 의장 이외의 이사는 의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. 의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집을 요구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 <신설 2018.04.27>

제 10 조의 2 (소집절차) <신설 2018.04.27>

- ①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소집일 3일 전까지 일시,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②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제 11 조 삭제 <2018.04.27>

제 12 조 (결의의 방법)

- ① 이사회의 결의는 정관 제38조 제1항에 의거 재적이사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결정한다. <개정 2018.04.27>
-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- 1. 이사의 회사 사업기회 이용에 대한 사전승인
 - 2. 이사 등과 회사간 거래의 승인
 - 3. 관계사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사전승인<신설 2018.04.27>
- ③ 이사는 이사회의 결의권을 대리 행사하게 할 수 없다. <개정 2018.04.27>
- ④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 <개정 2018.04.27>
- ⑤ 이사는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·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 <신설 2018.04.27>
-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18.04.27>

제 13 조 (부의사항)

- ① 다음 사항은 이사회에서 심의 결정한다.
 - 1.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
 - (1) 주주총회의 소집
 - (2)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허용
 - (3) 영업보고서의 승인

- (4) 재무제표의 승인
- (5) 정관의 변경
- (6) 자본의 감소
- (7) 회사의 해산, 합병, 분할, 분할합병, 회사의 계속 <개정 2018.04.27>
- (8)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
- (9)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,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,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
- (10) 이사,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<개정 2020.02.28>
- (11) 주식의 액면미달발행
- (12)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
- (13) 현금, 주식, 현물배당 결정
- (14)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
- (15) 이사의 보수 <개정 2020.02.28>
- (16) 회사의 최대주주(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함)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승인 및 주주총회에의 보고
- (17) 법정준비금의 감액
- (18)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

2. 경영에 관한 사항

- (1) 회사경영의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
- (2) 신규사업의 추진 <개정 2018.04.27>
- (3) 삭제 <2018.04.27>
- (4)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
- (5) 회장, 사장, 부사장, 전무, 상무, 상무보의 선임 및 해임
- (6) 공동대표의 결정
- (7)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, 운영 및 폐지
- (8)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
- (9)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. 단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.
- (10) 이사의 전문가 조력의 결정
- (11)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
- (12) 삭제 <2018.04.27>
- (13) 삭제 <2018.04.27>
- (14) 삭제 <2018.04.27>
- (15) 삭제 <2018.04.27>
- (16) 중요한 사규, 사칙의 제정 및 개폐
- (17) 지점, 공장, 사무소, 사업장의 설치·이전 또는 폐지
- (18) 간이합병, 간이분할합병,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의 결정
- (19)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
- (20) 대표이사 승계계획의 승인 <개정 2020.02.28>

3. 재무에 관한 사항

- (1) 최근 사업연도 말 기준 자기자본 100분의 10 이상인 시설투자에 관한 사항 <개정 2018.04.27>

(2) 최근 사업연도 말 기준 매출액 100분의 5이상인 단일판매 또는 공급계약의 체결 또는 해지 <개정 2018.04.27>

(3) 최근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의 100분의 5 이상인 유형자산의 취득 및 처분 <개정 2018.04.27>

(4) 최근 사업연도 말 기준 자기자본의 100분의 5 이상인 출자 또는 출자 지분의 처분 <개정 2018.04.27>

(5) 최근 사업연도 말 기준 자기자본의 100분의 5 이상의 선급금 지급, 금전 및 증권의 대여, 가지급 결정 <신설 2018.04.27>

(6) 신주의 발행

(7) 사채의 발행 또는 대표이사에게 사채발행의 위임

(8) 준비금의 자본전입

(9) 전환사채의 발행

(10)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

(11) 최근 사업연도 말 기준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이상인 단기자금의 차입 <개정 2018.04.27>

(12) 최근 사업연도 말 기준 자기자본의 100분의 5 이상인 담보제공, 채무보증, 채무인수, 채무면제 <개정 2018.04.27>

(13)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

(14) 자기주식의 소각

(15) 결손의 처분 <개정 2018.04.27>

4. 이사 등에 관한 사항

(1) 이사 등과 회사간 거래의 승인

(2) 이사의 회사기회 이용에 대한 승인

(3) 타회사의 임원 겸임

5. 기타

(1) 중요한 소송의 제기

(2)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

(3) 준법지원인의 임면, 준법통제기준 제정 및 개정 <신설 2018.04.27>

(4)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, 주주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<개정 2018.04.27>

②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1.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

2.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위원회가 인정한 사항 <개정 2018.04.27>

3. 준법지원인의 준법통제기준 준수여부 점검 결과 보고 <신설 2018.04.27>

4. 내부회계관리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상황 보고 <신설 2018.04.27>

5.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<개정 2018.04.27>

제13조의2 (이사회 내 위원회) <신설 2018.04.27>

① 이사회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각종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이를 통지받은 각 이사는 결의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사회 의장에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고, 이사회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,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

다시 결의할 수 있다. 다만, 감사위원회의 결의에 대하여 재결의 할 수 없다.

③ 각 위원회의 구성 등 세부 운영방안은 각 위원회 규정에 따르며, 위원회 규정 개정은 이사회에서 하여야 한다.

제13조의3 (사외이사 아닌 감사위원 후보자의 전문성·독립성)

① 이사회가 사외이사 아닌 감사위원 후보자를 주주총회에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 전문성 및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 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한다.

1. 전문성 : 제약산업, 법률, 경영, 경제, 금융, 회계, 세무 등
 2. 독립성 : 상법 제542조의11 제3항에서 규정하는 사항 및 기타 회사와의 이해관계
- <개정 2020.02.28>

제 14 조 (관계사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사항)

① 회사가 관계사 및 특수관계인과 거래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이사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. <개정 2018.04.27>

② 관계사 및 특수관계인과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영업거래의 경우 연초에 1회 이사회에서 승인을 얻는 것으로 한다. 다만, 최근 사업연도 말 기준 매출액의 10% 미만인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영업거래의 경우 이사회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. <개정 2018.04.27>

③ 통상적인 영업활동과 무관한 자금거래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이사회 전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.

제 15 조 삭제 <2018.04.27>

제 16 조 (관계인의 출석)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제 17 조 (직무집행감독권)

① 이사회는 각 이사가 담당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하거나, 처리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, 조사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경우 이사회는 해당업무에 대하여 그 집행을 중지 또는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

제 18 조 (간사) 이사회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1인을 둔다.

제 19 조 (의사록)

①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 <개정 2018.04.27>

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 <개정 2018.04.27>

③ 의사록은 영구 보존한다.

제 20 조 (사외이사의 활동지원 등) <신설 2018.04.27>

① 사외이사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임직원이나 외부전문인력의 지원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, 회사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에 소요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.

- ② 사외이사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사외이사만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.
- ③ 이사회는 사외이사를 대상으로 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.

제 21 조 (이사회평가)

회사는 매 사업연도 이사회 활동 및 개별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사업보고서 또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공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23.02.24>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3월 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
부 칙 <개정 2018.04.27>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20.02.28 개정>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23.02.24 개정>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3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.